

금강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 정관

제 정 : 2004. 2. 6.
개 정 : 2008. 4. 15.
개 정 : 2011. 6. 1.
개 정 : 2014.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서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금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충남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522, 금강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산학협력단의 업무)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그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이사 및 감사)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두며, 산학협력단장이
재임 중 이사가 된다.

② 총장이 임명하는 1인의 감사를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산학협력단의 재산 및 회계감사
2.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총장 보고

제6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전임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대학교 총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를 총괄한다.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행정부서) 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행정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부서에는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인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은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⑤ 총장은 산학협력단 단장과 협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대학교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안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사업의운영) 산학협력단은 시설의 임대 등 기타 산학협력단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지원 등)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지적재산권의 취득·관리와 시설 이전, 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시설의 무상제공 및 임대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재산 및 회계

제11조(재산의 종류)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의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4. 기타 총장이 정하는 산학협력단의 재산

제12조(운영경비)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2. 출연금·기부금·보조금
3. 사업수익
4. 차입금

제13조(수입)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의하여 접수된 기부금품

5. 법률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계약학과, 학부의 설치, 운영에 따른 납부금 등의 수입
6.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활용한 연구 및 실습 시설이나 장비 등의 사용료
7. 기타 법률상 산학협력사업으로 인정되는 수입금

제14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 운영비
2. 산학협력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 운영 지원비
4. 산학협력단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 보상금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특허정보조사,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7.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15조(회계관리) ① 산학협력단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6조(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제17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대학교 회계연도와 동일하다.

제18조(회계기관) 산학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는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하되, 필요시 대학교 회계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9조(비밀유지의무) 본 정관에서 규정한 제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해산)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

- ② 해산은 총장의 명에 의한다.
- ③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대학교에 귀속한다.
- ④ 해산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제22조(공고) ①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
2.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② 공고방법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로 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완료되는 날인 200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정관은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정관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정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